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I. 개 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8월 8일에 2012년 7월 22일(일) 시행된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1)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61건이었으며, 그 중 단순한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건으로 23개 문항에 관련된 것이었다.
-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없음'으로 판정하였다.
- (3) 4개 문항에 관한 답변 내용이 포함된 23개 문항의 심사 결과는 다음 자료와 같다.

II. 구체적 내용

1. 2013년도 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영역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답변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결과]

문항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함
7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8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9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1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9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23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24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33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실제문제』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성종 연간, 안정형의 아내 김 씨의 사내종 금동과 계집종 노덕은 김 씨의 옷을 훔치고 중 각돈의 옷을 가져온 뒤, 간통 현장에서 얻은 것이라며 추잡한 소문을 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사내종 끝동이 금동의 말을 듣고 김 씨의 옷을 김 씨의 사내종 막동에게 전하여 말아 두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안정형의 사촌형수인 간아가 김 씨를 내쫓고 싶어 꾸민 일이었고, 결국 무고로 밝혀졌다.

노비가 상전을 모해(謀害)한 데 대한 규정은 명률(明律)에 없다. 의금부에서는 노비들에 대하여 명률에 있는 다음 두 조문의 적용을 따져 보았다.

○ 모반(謀叛: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따르려 모의함)의 경우 공모자는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형에 처하며, 알면서 지수하지 않은 자는 장 100, 유 3,000리에 처한다.

○ 모반대역(謀反: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 모의함. 大逆: 종묘, 왕릉, 궁궐을 훼손하려 모의함)의 경우 공모자는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하며, 실정을 알면서 고의로 숨겨 준 자는 참형에 처한다.

의금부는 결국 간아는 장 100, 유 3,000리, 금동과 노덕은 참형, 막동과 끝동은 장 100, 유 3,000리로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본을 올렸다. 그런데 막동과 끝동의 형량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있었다. 이를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성종 8년 12월 23일]

동부승지 이경동이 의금부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중 끝동이 금동의 말을 듣고 실정을 알면서도 상전과 각돈의 의복을 막동에게 가져다 준 죄와 중 막동도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말아 둔 죄는 형이 장 100, 유 3,000리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좌우에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막동과 끝동이 필시 그 모의를 알았으니 그 죄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자, 임금은 “그렇지.”라고 말하였다.

이경동이 아뢰었다.

“모반(謀叛)이더라도 그 모의에 참여한 게 아니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말은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따르려 했다는 것이지,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 한 죄가 아니라는 게로구나. 사직을 뒤흔들려는 모의가 있고 그것을 아는 자가 있다면,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막동들이 상전을 모해한 일은 이와 무엇이 다른가?”

좌참찬 임원준과 지평 강거효도 “막동과 끝동이 그 죄에 참여하여 알았으니 죽여야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호응하였다.

형조 참의 이맹현이 아뢰었다.

“율문에서는 모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죽이고 그 모의를 안 경우에는 장을 처유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의에 참여한 경우’란 처음부터 그 모의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그 모의를 안 경우’란 뒤에 그 모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률상 사형에 이르지 않으니 죽이는 것은 아직 안 됩니다. 다시 국문하여 죄를 정하옵소서.”

임금은 “막동과 끝동이 사형인 데에는 의심이 없지만, 공경들과 더불어 널리 의논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성종 8년 12월 24일]

임금이 여러 정승과 육조의 당상을 불러들였다. 대간(臺諫)에서 간아와 관련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자, 임금이 말하였다.

“사형의 죄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들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하니 말들 해 보라.”

달성군 서거정이 아뢰었다.

“막동은 안정형 집의 늙은 종으로 옷을 맡아 주었고, 끝동은 금동의 말에 따라 옷을 받아다 주었으니, 모두 사정을 아는 이들입니다. 지금 ‘알면서 자수하지 않은’ 데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종들은 ‘실정을 알면서 숨겨 준 죄’로써 죽여야 마땅합니다.”

영돈녕부사 노사신이 아뢰었다.

“끝동은 나이 어리고 어리석으니 그 주인의 의복을 가지고 왕래하였다 한들 저가 어찌 그 주인을 모해하려는 것인 줄 알았겠습니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서거정이 맞섰다.

“나라의 난신과 집안의 역노(逆奴)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끝동이 이미 주인을 해치는 데 간여하였는데 죽인들 뭐가 해롭겠습니까?”

이승소가 아뢰었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으로 정해야 합니다. 끝동은 모르는 놈입니다. 어찌 그렇게까지 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료들의 의견이 서거정을 따랐다. 임금이 말하였다.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않는 일도 옳지 못하고, 죽이지 않을 것을 죽이는 일도 옳지 못하다. 막동과 끝동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매우 법에 합당하다. 막동과

끝동은 적용 조문을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는 올린 대로 시행하라.”

의금부가 적용 조문을 바꾸어 막동과 끝동을 참형의 율로 처결하도록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5. 위 글에서의 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막동과 끝동의 행위가 모해를 공모한 것으로 판정된 까닭에 의금부는 적용 조문을 바꾸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 ② 끝동의 죄를 모반대역이라 보는 쪽은 끝동이 모해의 실정을 알았다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막동의 죄를 모반(謀叛)이라 보는 쪽은 막동이 김 씨를 해하려했다는 것보다는 간아와 내통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 ④ 금동과 노덕에 대하여는 의금부에서 올린 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들의 죄는 모반(謀叛)으로 판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간아는 김 씨와 노주(奴主) 관계가 아니어서 간아에 대하여 모반(謀叛)이나 모반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5번 문항 상세 답변 내용

이 문항은 범행에 참가한 인물들에게 어떤 법 조문을 적용했을 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막동과 끝동에 대해 의금부는 적용 조문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 적용된 조문은 모반(謀叛)이 아니면 모반대역일 것입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볼 때, 막동과 끝동이 모해를 공모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그 어느 쪽이 적용되더라도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조율한 조문이 어느 것이었든 그들을 사형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형을 처하기 위하여 조문을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근거를 함께 참조할 것 없이 이것만 보더라도 “막동과 끝동의 행위가 모해를 공모한 것으로 판정된 까닭에 의금부는 적용조문을 바꾸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201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문항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함
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7	문항 오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8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1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6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17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23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2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함
28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함
29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탑재하지 않음

『실제문제』

1.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황>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A국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직접선거로 입법부,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를 구성한다. 문서화된 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법부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사법

부 외에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두어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는 데 종신직위를 보장받는다. 최근 A국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입법부가 다수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舊)정권에 의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법률들이 위헌이라는 결정들을 내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비판이 헌법재판기관에 제기되었다.

<비판>

(가) A국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그 구성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나) A국의 헌법재판기관은 구성뿐만 아니라 활동도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기관의 심사대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이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은 당연히 국민 의사의 반영이다.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재판기관은 입법부에 반영된 국민의 의사에 반대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 ① 헌법재판기관 구성원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는 해소된다.
- ② 헌법재판기관이 법률들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가)는 해소되지 않는다.
- ③ (나)에 따라 헌법재판 제도 자체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헌법재판기관 구성과 관련된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의사의 반영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 ⑤ (가), (나) 모두 '국민의 의사'라는 용어를 다수결로 정해진 국민의 의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 1번 문항 상세 답변 내용

①번 답지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선출방식'과 '임기' 모두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가)의 비판은 해소될 수가 없다. 직접선거로 헌법재판기관 구성원들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임기를 기존처럼 종신제로 보장한다면 선거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④번 답지는 옳은 진술이다.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는데, (가)는 헌법재판기관이 그 구성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나)는 (가)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 의사의 반영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⑤번 답지는 옳은 진술이다. (가)에서 ‘국민의 의사’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고 …”를 고려할 때, ‘다수결로 정해진 국민의 의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나)에서도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은 당연히 국민 의사의 반영이다”는 문장에서 ‘국민의 의사’라는 용어는 국민들에 의한 대표들의 선출, 즉 다수결로 정해진 국민의 의사를 의미한다.

『실제문제』

25. A, B와 <조건>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 표적의 매력성이란 범죄자가 범행대상(표적)을 원하는 정도, 그 대상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범행가능성과 범행거리(범죄자의 거주지와 범행 현장 간의 거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이익요소이다. 범죄자는 매력 있는 표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범죄자가 표적의 매력성을 중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범행할 가능성이 높고, 범행을 위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매력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범행의 계획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과가 많을수록 강해진다.

B : 검거위험성이란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손해요소로서 범행가능성과 범행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범죄자들은 범행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집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는 범행을 피하려 한다. 자신을 알아 보는 사람들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행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주로 범죄자의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범죄자의 거주지로부터 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범행의 빈도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

하지만 이 지점을 넘어서 다음부터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범행빈도가 감소한다. 또한 범죄자는 나이가 들수록 검거위험성을 표적의 매력성에 비해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검거위험성을 매우 중시하면 검거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표적의 매력성이 높더라도 범행을 하지 않는다.

<조건>

-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는 범행을 위한 이동 거리가 같다.
- 재산범죄는 폭력범죄보다 계획성이 높다.
- 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보 기 】

- ㄱ. 젊은 절도범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나이 든 성폭행범보다 범행거리가 더 길 것이다.
- ㄴ. 현재 주거지에 오래 거주한 강도범의 범행거리는 다른 동네에서 갓 이사 온 강도범의 범행거리보다 더 길 것이다.
- ㄷ. 검거위험성을 매우 중시하는 두 명의 강도범 중 전과가 많은 쪽이 전과가 적은 쪽보다 보안시스템이 아주 잘 된 은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문제 25번 문항 상세 답변 내용

대부분의 이의 제기는 <보기>의 ㄱ이 정답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절도범과 성폭행범의 비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젊은'과 '나이 든'을 비교해서 범행거리를 따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나이와 범행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는 B의 주장에서 "나이가 들수록 검거위험성을 표적의 매력성에 비해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검거위험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특정 거리(거주지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범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함축할 뿐, 중시 정도에 비례하여 범행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덧붙여, 나이가 들수록 검거위험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표적의 매력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매력성의 중요도가 낮아지면 범행거리가 짧아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젊은 사람의 경우, 검거위험성보다 표적의 매력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위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기> ㄱ에서 주어진 나이 요소로부터도 범행거리의 비교에 관해 추론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젊은 절도범'과 '나이 든 성폭행범' 사이의 범행거리의 비교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으므로 보기 ㄱ은 옳은 진술이다.

『실제문제』

28.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운영했다. 원하는 사람에게 은행권을 금화로 교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잉글랜드은행은 파운드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은행권의 발행량을 금보유량에 원칙적으로 연계시켰다. 그런데 1797년 가뭄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프랑스 군대의 본토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금화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결국 ㉠금태환의 한시적 정지를 선언하였다.

이후 금화가 아닌 순수한 금, 곧 지금(地金)의 시장가격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영국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 이때 물가상승의 원인을 금태환의 정지에서 찾았던 '지금파'는 '금보유량에 비례하는 은행권 발행'이라는 규율원리가 깨짐으로써 잉글랜드은행이 은행권을 초과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올라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반지금파'는 은행권의 경우 상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우량어음을 매입해 주거나 이들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모든 은행권 발행의 배후에는 상거래와 실물경제활동이 대응된다며, 은행권의 초과발행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논쟁 과정에서 가장 돈보였던 사람은 헨리 손턴이었다. 그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며,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물가상승의 원인을 놓고 벌어졌던 이 논쟁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 그는 파운드화 가치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 비판적이었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가 아닌 다른 것

일 수 있음을 인정했던 점에서는 반지금파와 입장을 같이 했다. 하지만 그는 은행에 제시된 어음의 경우 과거 생산활동의 결과는 물론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사업가들의 기대에도 좌우되므로, 호황으로 기대가 낙관적인 상황에서 모든 우량어음에 대해 은행권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추가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율원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 점에서는 지금파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불황일 때는 중앙은행이 재량권을 가지고 경기 약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지금파의 일면적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 ① ㉠에 대한 손턴의 입장은 '지금파'보다 '반지금파'에 가까웠을 것이다.
- ② 당시에 극심한 흉년으로 곡물가가 상승했다면, '지금파'의 논지는 약화되고 '반지금파'와 손턴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 ③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파'를,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사람들은 '반지금파'의 주장을 지지했을 것이다.
- ④ 은행권 발행에 관한 중앙은행의 결정을 엄격한 원리에 의해 제약할 필요성은 '지금파'가 가장 강하게 인정하고, 다음으로 손턴, '반지금파'의 순서일 것이다.
- ⑤ 실물경제 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불황의 심화를 우려해 은행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업가들이 늘어났다면, 손턴의 논지는 약화되고 '지금파'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문제 28번 문항 상세 답변 내용

이의제기의 요점은 “불황의 상황에서 은행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업가가 늘어난다면, 금보유량에 비례하는 은행권 발행이라는 규율원리가 깨지고, 따라서 은행권을 초과발행하는 사태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금파'의 논지가 강화되고 '손턴'의 논지는 약화된다는 것이다.

지문에 따르면 '지금파'는 잉글랜드은행의 규율원리 준수 여부에 따라 통화량 변동 및 물가변동이 온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답지 ⑤는 규율원리의 준수여부와 무관하게 통화량이 변동되는 사례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례는 지금파의 논지를 약화한다. ⑤가 제시하는 상황은 사업가들이 은행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함에 따라 경제 내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것은 은행권이 초과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 과소 유통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물가가 더욱 하락하고 불황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이므로 '지금파'의 논지를 약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가 아닌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경기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손턴의 논지를 강화한다.